

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0월 5일.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10월15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김용수)

가. 제안이유

-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범위 규정(안제 2조)
- 회계간 전용할 수 없음을 규정(안 제3조)
- 특별회계 사무는 일반회계 예에 의함을 규정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■ 종합검토결과

- 먼저 설치근거를 살펴보면
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 및 시·군·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
- 특별회계 세입·세출은 동법과 본 조례안이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와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, 기타 자구등에도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1.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?	○ 환경에 관한 지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. 끝 .